

#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연구

홍상기 / 신동빈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정보센터)

## I. 연구개요 및 목적

### 1. 연구의 개요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 확정후 NGIS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지원연구사업으로서 공간정보 관련 지원연구사업을 연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95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본구상"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어 공간정보의 활용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공간계획 관련분야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제안하였음
- '96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세부 추진방안연구"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어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방안을 제안하였음
- '96년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설치방안 연구"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어 외국에 대한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설치를 위한 기술적 요건과 법제도적 요건 그리고 재정적 요건을 검토하였음
- '97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험연구"의 연구과제가 수행되어 공간정보를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NGIS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과제의 수행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2. 연구의 목적

- NGIS 구축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공간정보 관련 지원연구 사업의 내용과 보완되어야 할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국내외적인 수집 및 조사·분석을 통하여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마련

### 3. 연구의 내용

- 전차수행 연구결과에 대한 review
  - 공간정보의 개념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기본구조 구상
  - 공간정보의 분류
  -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개념
  -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모형
  - 우리나라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정립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파악
  - 외국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파악
  - 국내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파악
- 국가공간정보기반에 대한 개념 정립
-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모형
-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수립

## II.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현황

### 1.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현황

#### 1.1 외국의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현황

##### 1.1.1 미국

###### 가. 미국의 국가정보기반 구축 사업

- 미국은 국가정보기반에 대하여 진보된 정보기반이 미국을 세계경제(global economy)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국가는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생각
- 국가정보기반이 지리적, 신체적, 경제적 장애를 개선시켜 모든 국민들에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을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임

- 미국 국가정보기반은 응용 부문, 서비스부문, 비트웨이(Bitway)부문의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됨
- 미 연방정부에서는 국가정보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국가경제회의와 백악관 과학 기술정책 사무국이 주체가 되어 정보기반 태스크포스(IITF)를 결성함

#### 나. 미국 공간정보기반시설 구축 사례의 시사점

- 이렇게 생산된 정보들이 매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은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임
- 그래서 납세자들은 쉽게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정보 검색서비스(GILS : 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를 시작하게 된 것임

### 1.1.2 호 주

#### 가. 호주의 국가정보기반 구축 사업

- 호주는 네트워크 국가를 지향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다음 4가지로 보고 있음
  - 모든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와 준주를 연결하고 국제적 접속도 제공하는, 국가적 고속 중추(Backbone) 서비스의 구축. 1996년까지는 적어도 34Mbps로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보편적인 네트워크 접속 방법 제공(desktop equipment, s/w, link capacity 등)
  - 오스트레일리아 정보 네트워크 서비스 발전의 촉진
  - 네트워크 관리능력의 향상
- 호주연방은 자국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짐
  - 호주연방은 호주정부정보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형평성있는 접속을 제공하는 여러 국가의 행정부 중에서 세계의 리더가 될 것임
  - 호주인들은 어디서나 쉽게 접속을 하게 될 것이며, 호주 어디에서나 비용 효과적일 것임
- 위와 같은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하여 호주연방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
  - 행정서비스 전달 및 비용 측면의 리엔지니어링
  - 음성 및 정보 네트워크에 관한 새로운 모델의 설립
  - 국가 정보 기술 활동의 아웃소싱과 협력 증대
  - 운영진에 대한 정보 기술측면에서의 투자
  - 국가 정보 기술구조의 합법성 제고

- IT 혁신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재정 메카니즘 준비
- 정보 관리에 관한 기본틀 확립
- IT 관련 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 부처별 계획의 질 향상

#### 나. 호주 사례의 시사점

- 미국의 USGS에 해당하는 것이 호주의 AUSLIG라면 미국의 FGDC에 해당하는 기관이 ANZLIC과 CSDC를 합친 정도로 파악가능
- 이러한 기관들의 설치 배경이 미국과 다른 점은 미국의 경우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에 대한 공개라는 측면에서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이 실시되었는데 반해 호주의 경우는 단순히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호주의 토지 및 공간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이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 노력을 방지하고 또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보장한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임

#### 1.1.3 싱가포르

##### 가. 싱가포르 IT2000 비전과 국가정보기반 구축사업

- 1991년 수상 고척동에 의해 발표된 IT2000 비전은 국가정보기반(NII)을 이용하여 방대한 기업 정보 및 개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21세기 싱가포르로 변모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임
- 싱가포르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국가전산위원회(National Computing Board : NCB)가 정부기관 및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함께 위원회를 결성, 정보 기술 인력, 정보기술 문화, 정보통신기반, 정보통신 응용서비스, 정보통신 산업,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위한 분위기, 공조와 협력 등의 7개 부문으로 구성된 청사진을 제시

##### 나. 싱가포르의 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

- 싱가포르의 Land Data Hub는 1989년 정부차원의 대민 서비스(the Civil Service) 수행시 각 기관간에 수치 토지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Hub 구성의 필요성에 의해 태동한 개념임
- Land Data Hub에서 제공하는 정보 레이어를 다음 표와 같이 6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표 1> Land Data Hub에서 제공하는 정보 레이어

정보 레이어	내용
지적도 관련	지적 필지 레이어, 건물, 도로, 배수로, 전기선로, 가스망, 하수도, 상수도
지 형 도	건물 레이어, 도로, 수문, 삼각측량점, 도로 중심선, 등고선
지능도로 중심선 (Intelligent Road Center Lines)	Single Road Center Lines
싱가포르 윤곽선 지도 (Outlines Map)	해안선, 천연 특징물(Natural Features), 주요 도로, MRT역 및 철로, 고속도로, 지도 기호
경 계 지 도	인구센서스 경계
기 타	정부 건물 등록 대장, 싱가포르 가로 디렉토리 맵

#### 다. 싱가포르 사례의 시사점

-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우선 눈에 띄는 사항은 강력한 행정 서비스 기능임
- 싱가포르의 사례 중 특히 그 공간정보의 유통방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경우 Land data의 유통이 2가지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 제공용과 공공기관 제공용으로 나누어져 있어 일반 공공에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는 일정 양식의 문서를 이용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재는 물리적 매체(디스켓 또는 릴테이프)만을 이용해 제공함
  - 공공기관에 제공할 때는 수수료는 없이 관련 담당 책임자의 서명과 함께 필요한 정보의 가공정도를 상당히 자세한 정도로까지 요구할 수 있음

#### 1.1.4 유 럽

##### 가. 유럽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식 및 대처

- 유럽의 공간정보기반 구축 계획은 EC에서 주관하는 유럽의 정보화사회 구축 계획의 한 측면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유럽 공동체의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을 잘 설명해주는 보고서로 1994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유럽의회에 제출된 "유럽과 세계 정보사회"라는 제목의 Bangemann 보고서가 있음
- 이 보고서는 유럽공동체가 정보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신

부문 역시 시장 메카니즘 속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조치들이 유럽 공동체에 경쟁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각 회원국들의 여러 장애점들을 함께 해결하는 유럽 수준에서 취해져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나. 유럽 정보시장의 개발 정책과 공간정보기반 구축 사업

- IMPACT(the Information Market Policy ACTions) 프로그램은 전자 정보서비스 분야에 대한 내부 시장의 구축 및 진보된 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IMPACT(the Information Market Policy ACTions) 프로그램은 다음 4가지 집행계획 노선을 설정
  - 시장에 대한 이해의 증대 : 정보시장관측기구(Information Market Observatory, IMO)의 활동을 통해 성취
  - 법적, 행정적 장애의 극복 : 법률자문위원회(Legal Advisory Board, LAB)의 활동을 통해 극복
  - 사용자 친밀성의 증대 및 정보 가독성의 증대 : 규범, 표준 관련 부문과 자각, 사용자 지원 및 훈련 활동을 자극하여 증대
  - 전략적 정보 이니셔티브의 지원 : 이것이 유럽 정보시장의 개발에 주로 공헌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집행노선에 따라 추진된 IMPACT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개방 정보 교환(Open Information Interchange)을 위한 표준
  - 지리 정보(GI)
  -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 서비스
  - 정보시장관측기구(IMO)
  - 법률자문위원회(LAB)
  - 정보 생산품 및 서비스의 품질

다. 유럽 사례의 시사점

- 유럽 공동체는 상호 국가를 인정하면서 통일된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까닭에 정보기반의 구축 계획 역시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 입각해서 추진되고 있는 듯함
- 즉 정보 통신 기반 구축을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통합이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럽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의 관건이 되고 있음
- EC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럽지리정보기반(EGII) 구축 사업은 특히 EC 회원국들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기반 구축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큼

- 유럽 공동체에게 있어 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은 새로운 정보시장을 준비하는 그야말로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1.2 국내의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현황

### 1.2.1 구축현황

가. 국립지리원의 수치지형도 제작현황

- 국립지리원에서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간 전국의 지형도를 수치지도화함
- 도시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78개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1/1,000 지형도를 입력하고 있음
- 반면 산악지역은 1/25,000으로 입력하고 있으며,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5,000으로 입력하고 있음

<표 2> 수치지형도 구축현황

(단위 : %)

구분 \ 년도	'95	'96	'97	'98	소계	비 고
1/1000	1.7	21.9	43.7	32.7	100	78개 도심지역
1/5000	30.6	35.2	34.2	-	100	산악제외한 전국
1/25000	-	47.2	52.8	-	100	산악지역

나. 공간정보 수요기관의 수치지도 제작현황

- 지형도 수치지도화 사업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공간정보 수요기관은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이 다름

<표 3> 공공기관의 수치지도 구축현황

구분	구축한 데이터의 특성	데이터의 종류
도청	·도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파악 ·소축척의 지형도(1/25000) 및 다양한 주제도	·지형도, 토양도, 인공위성자료, 행정구역도, 개발제한구역도, 임상도, 지질도 등
시청	·도시내 시설물 관리 ·대축척의 상세한 향측도(1/500)	·지적도, 지하시설물도, 도시계획도, 도로망도, 지상·지하시설물도 등
투자기관 및 업체	·경제성 위주의 데이터 구축 ·대개 대축척의 지형도를 입력	·도로망도, 건물현황 등

다. 국내 공공GIS활용체계 구축현황

- 국내 공공GIS활용체계 구축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함
- 초창기에는 활용체계의 구축에 있어 자료제작의 기술향상이나 자료구축의 표준화 등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하기보다는 현업 부서의 실무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범사업과 일부 영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무름
- 최근에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 비해 많은 기술 수준이 발전되어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내용을 구축하고 있음

1.2.2 개선방향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수요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링,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구축해야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치지도 제작을 생산자 위주에서 사용자 위주의 데이터 생산체계로 전환해야함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제작하는 수치지도를 통합·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틀인 프레임워크 데이터와 이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구축해야함

가.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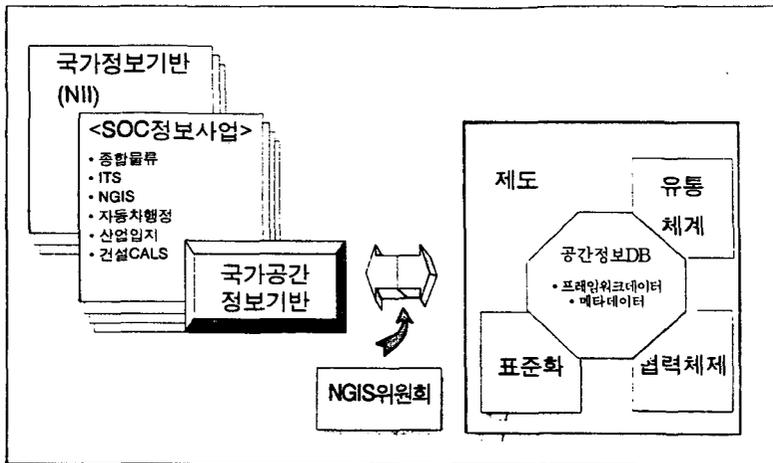
-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다양한 축척의 공간정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데이터를 구축해야 함

나. 메타데이터 구축

-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기관은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메타데이터를 작성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의 특성과 구축과정에 대한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모든 기관은 자신이 제작, 유지·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들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1.3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모형

- 다음 그림은 우리 나라의 국가공간정보기반 모형을 예시적으로 도식화한 것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핵심을 이룸
-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유통체계, 협력체제가 필요하고 이들은 제도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보여줌



<그림 1> 우리 나라의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모형(案)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국가에서 생산, 유지·관리, 유통해야 할 데이터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음
- 표준화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이용 및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모델, 정확성, 전송, 좌표체계 등에 관한 표준을 의미함
- 협력체제는 공간정보 생산·관리기관들 간에 자료를 호환하고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구성해야 할 협력체제임
- 유통체계는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한 전자적 네트워크를 말함

- 마지막으로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에 필요한 표준, 협력체제, 유통체계가 행정적인 실행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함

### III.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요소

#### 1.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기초

- 국가공간정보의 기초(Foundation)
  - 국가공간정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있음
  - 따라서 공간자료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교환하는 것이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간자료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들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공통의 기초(foundation)가 필요함
  - 국가공간정보의 기초는 "직접 관측 가능하거나 기록 가능한 최소의 자료로서 그것을 토대로 다른 공간자료들을 정위치화 하고 편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로 정의됨
  - 국가공간정보의 기초로서 측지기준점(geodetic control), 정사영상(orthorectified imagery), 고도자료(elevation)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가장 공통적인 성격과 신뢰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가지는 바탕 공간정보(template)로서 그 위에 프레임워크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는 지리적 기반을 제공함

#### 2. 프레임워크 데이터

##### 2.1 국가 수치지형공간정보 프레임워크

###### 2.1.1 국가 수치지형공간정보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구축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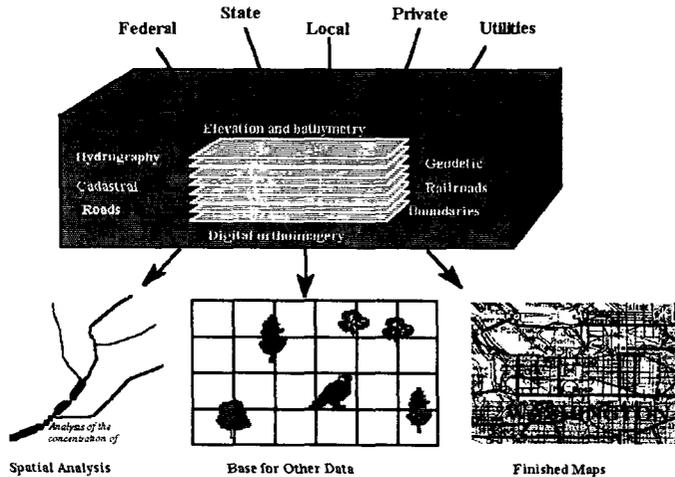
- 수치지형공간정보의 응용정도가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주제 정보가 거의 없는 탓에 이용자들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항상 요구함
- 하지만 투자와 협력관계 및 공동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
-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남

###### 2.1.2 프레임워크 데이터 구축의 목적과 목표

- 프레임워크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치 지형공간정보의 기초 집합임

○ 목적(goals)

- 어느 기관이든 속성정보 및 상세한 도형정보를 부가할 수 있는 지형 공간적 기초를 제공
- 토양, 식생, 지질 등과 같은 주제 데이터를 첨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
- 분석 결과 표시를 위한 기본도로서의 역할을 제공



<그림 2> 많은 지형공간정보 관련 활동에 대한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기능

○ 목표(objectives)

- 프레임워크란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하며, 정보 수집시의 비호환성, 중복, 재수집 등의 문제를 감소시킬 국가적으로 인정된 참조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표준을 따름으로서 인증되어야 함
- 강력한 정보 집합으로서 지방정부, 주정부 및 연방기관의 다양한 기구에서 수집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정부기관이 수집한 높은 해상력을 가진 정보와 더불어 지역 및 국가관련 연구에 필요한 일반적이면서 낮은 해상력의 정보도 있어야 함.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항상 높은 해상력의 프레임워크 데이터로부터 생성되어야 하며 다르게 표현한 사상들에 대하여 링크나 참조 데이터가 존재해야 함
- 이용자가 그들의 응용프로그램에 프레임워크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하고 속성 및 여타 정보에 대한 투자도 지속되어야 함. 그래서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필요와 기능 변화에 관계없이 신속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프레임워크에 대한 접근은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능해야 함

2.1.3 프레임워크 구축과 관리

○ 프레임워크 구축 사업은 다양한 내용, 품질, 정책 및 절차상의 범주를 충족할

수 있는 수치지형공간정보 제공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함

- 프레임워크 구축 사업에 기여하는 규칙과 요구사항들은 최소화되어 유동적이지 않아야 함
- 프레임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기여하는 수많은 기구들은 서로 다른 임무와 목표를 지니고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야함
- 프레임워크 구축시 사용자와 기여자들의 능력 및 요구사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함

#### 2.1.4 프레임워크 구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

- 프레임워크 구축 사업의 성공여부는 기여자와 사용자 모두 프레임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인지할 때만이 가능하며, 그 이익은 다음과 같음
  - 프레임워크 데이터는 우선 각 기관의 정보 수집 및 통합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켜줌
  - 또한 각 기관은 각자의 프레임워크 데이터 구축에 기울일 노력을 줄임으로써 그들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음
  - 기관들은 응용서비스 부문의 개발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그 개발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음
  - 다른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음
  - 다른 사람들이 수집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음
  -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획득 할 수 있음

#### 2.1.5 프레임워크 데이터 정보 항목

- 외국의 선례를 참조하고 국내에서 제작된 공간정보의 현황 및 향후 공간정보기반 구축 방향을 고려하여 프레임워크 데이터 정보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정 보	내 용
측량 기준 (Geodetic Control)	측량기준점 위치, 명칭, 고유 식별자, 위치, 지구타원체 고도
수치정사영상 (Digital Orthoimagery)	항공사진이나 센서 표정(orientation) 및 지형경사에 의한 변위를 제거한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얻어진 지리 참조된(georeferenced) 영상. 프레임워크 데이터는 수미터 단위에서부터 수십미터 단위의 해상도를 가질 수 있음
고도 정보 (Elevation Data)	표면에 대해서는 고도 행렬(elevation matrix), 깊이에 대해서는 수심 및 격자 바닥 모형(soundings and gridded bottom model), 해안선은 해안선 형태(혹은 조수간만을 고려한 형태)의 속성을 지님
교통 (Transportation)	오솔길(trails), 철로, 수로, 공항, 항구, 교각 및 터널 속성에는 영구 형태식별자 및 명칭이 들어간다. 가능한 곳에서는 선형 참조 체계(linear referencing systems)가 식별자로 사용됨. 또한 도로망은 기능적인 구분과 가로 주소로 속성에 포함됨. 오솔길과 철로는 형태속성을 지니게됨
수문 (Hydrography)	호칭의 유역 파일 버전3.0(RF3)의 접근에 근거한 流域. 이러한 유역에는 유역코드, 명칭, 유역형태(예컨대 개천 혹은 못), 공간표현의 속성이 포함될 것임
행정구역 (Governmental Unit)	국가, 주, 군(county), 합병지역 및 통합도시, 기능 및 법적으로 하위의 시가화구역, 미국 인디안 보호구역, 알래스카 원주민 지역 등을 연방정보처리표준(FIPS) 코드와 명칭의 속성을 포함. 경계는 관련 지형 및 형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
지적 (Cadastral) : 지적참조체	공공토지측량체계와 같이, 대규모 공공유보 획지(군사지역 및 국립공원 등), 측량구역 및 경계, 각각은 명칭 또는 공통 식별자와 품질에 대한 정보를 포함

### 2.1.6 참여기관의 역할

○ 참여기관별로 구분하여 그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참 여 기 관	역 할
정보 생산자 (Data Producer)	프레임워크 개발에 공헌해야 한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데이터를 표준(속성, 메타데이터 및 품질 검사를 포함하는)에 맞추어 생산 및 관리. 일부 생산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프레임워크를 공급
지역 통합자 (Area Integrator)	지리적 구역에 대한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조정을 보증. 그리고 표준, 보증정책 및 절차를 집행하며 주제와 주제사이의 유지관리 활동을 조정하며 갱신작업을 수행. 이때의 책임지역은 어느 한 주, 일단의 주들의 그룹 혹은 한 주의 부분이 될 수 있음
정보 배포자 (Data Distributer)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위임 배포자는 공식적인 배포본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됨
주제 관리자 (Theme Manager)	생산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으며 통합자들을 조정하고 최후의 생산자 및 통합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보증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표준을 개발 및 추천해야 하며 안전한 저작물이 되도록 보장해 주어야함
주제 전문가 (Theme Expert)	한 데이터의 주제에 대해 지식이 많은 커뮤니티의 기술적인 전망을 제공. 이러한 커뮤니티들이 어느 주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생산할 것임
정책 조정자 (Policy Coordinator)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 밖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 이러한 역할에는 표준의 승인, 자원의 수요의 규명 및 그 획득을 위한 공조, 주제관리자 임명, 주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의 해결, 시범 사업의 개념 및 집행전략 선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의 고양 등이 포함

### 2.1.7 추진 계획

○ 프레임워크 추진계획은 다음의 세단계로 나누어 진행됨

- 1단계 : 관련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프레임워크 구상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수행함
- 2단계 : 1단계에서 검증된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활동을 가능한 데이터 source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함
- 3단계 :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관리와 갱신을 하며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정기적인 활동과정을 향상시킴

## 2.2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결정 및 세부내용

### 2.2.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수요분석 및 결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용자의 수요분석임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GIS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고유 코드체계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최근에 도입한 기관들은 데이터의 호환성을 의식하여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준코드를 사용하고 있음
- 지형도의 활용순위는 도로, 건물, 행정, 수계, 지형(등고) 등이며, 지적의 지적경계와 지번 등에 대한 수요 또한 매우 높음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해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종류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우리 나라 수치지형도(1/5000)의 대분류 항목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 외국의 프레임워크 데이터와 우리 나라의 수치지형도

수치지형도의 대분류	미 국	영 국	호 주
철 도	-	-	철도중심선
하 천	수문	-	해안선, 하천, 내륙의 수계
도 로	교통	도로중심선	도로중심선
건 물	-	-	주요시설물, 항공시설, 해양교통시설
지 류	-	-	-
시 설 물	-	-	-
지 형	측지기준 표고데이터	측지기준 표고	측지기준 지표면 표고
행 정 경 계	행정구역	경계선	행정경계
주 기	-	-	지형지물명/지명
기 타 (外國에만 있음)	수치정사영상, 지적	지형도, 좌표화된 주소정보	도지이용현황도, 항공사진, 인공위성데이터 등 다수

- 앞의 조사와 분석결과와 국내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한 프레임워크 데이터 선정(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프레임워크 데이터 선정(案)

종 류		속 성 정 보
측지기준	측지기준	분류코드, 국가기준점, 항측기준점 등
표 고	등고선	등고값
	DEM	-
행정경계	행정경계/해안선	법정코드, 법정명
수 계	하천중심선	분류코드
	하천경계	-
도 로	도로중심선	분류코드
	도로경계	-
주요건물	주요건물	분류코드, 명칭
지 적	필지 경계선	지번, 법정코드
	수치정사영상	-
지 질		지질 구분
토 양		토양 구분
산 림		산림 구분

### 2.2.2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세부내용

#### 가. 측지기준

##### ○ 투영법

- 해방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구면좌표를 계산함에 있어 별다른 검토 없이 일본의 서적에 따라 Gauss-Krüger 투영법 공식을 적용, 기존 가우스 상사이중투영법과 혼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있었고, 토지조사사업당시의 BL↔XY좌표환산 계산에 관한 공식·양식 등은 지금도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는 채로 사용되어왔음
- 결과적으로 지적측량의 목적에 비추어 등록당시의 방식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Gauss-Krüger 도법에 대한 이론과 방법의 검토 없이 도입하여 투영법을 혼용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측량성과를 모두 검산하여 조속히 정비하여야함

##### ○ 투영원점

- 우리 나라의 평면직각좌표계는 3개의 투영원점을 기본으로 구성되며, 북위 38° 를 기준으로 동경 2° 씩 구획되어 있음
- 이와 같이 3개의 투영원점을 기준으로 전국을 동부, 중부, 서부로 구분하여 평면직각좌표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의 좌표가 양수가 되도록 종축에 500,000m(단, 제주도는 550,000), 횡축에 200,000m의 정수값을 부여하고 있음

○ 일반원점

원 점	위 도	경 도
서부원점	북위 38도	동경 125도
중부원점	북위 38도	동경 127도
동부원점	북위 38도	동경 129도

○ 구소삼각원점

원점	위 도	경 도	삼각점위치
望山	북위 37° 43'07".060	동경 126° 22'24".596	경기(강화)
桂陽	북위 37° 33'01".124	동경 126° 42'49".685	경기(부천, 김포, 인천)
烏本	북위 37° 26'35".262	동경 127° 14'07".397	경기(성남, 광주)
加里	북위 37° 25'30".532	동경 126° 51'59".430	경기(안양, 인천, 시흥)
登攀	북위 37° 11'52".885	동경 127° 51'32".845	경기(수원, 화성, 평택)
枯草	북위 37° 09'03".530	동경 128° 14'41".585	경기(용인, 안성)
栗谷	북위 35° 57'21".332	동경 128° 57'30".916	경북(영천, 경산)
賢倉	북위 35° 51'46".967	동경 128° 46'03".947	경북(경산, 대구)
龜岩	북위 35° 51'30".878	동경 128° 35'46".186	경북(대구, 달성)
禁山	북위 35° 43'46".532	동경 128° 17'26".070	경북(고령)
所羅	북위 35° 39'58".119	동경 128° 43'36".841	경북(청도)

※ 지적법 제 29조 및 시행령 제27조 발체

나. 표고

- 지형을 모형화하는 목적은 지표면과 그 고도특성을 필요한 만큼 정확히 수치적으로 표현하는데 있는 즉 지표면의 고도를 추출하고, 이를 일정한 구조로 조직화하여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치적으로 지형을 표현하고자 수치지형모형을 구축하는 것임
- 공간상의 연속적인 기복변화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모형을 수치고도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 DEM)이라 하며, 수치지형모델(Digital Terrain Model ; DTM)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됨(Burrough, P.A., 1989)

다. 행정경계

-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관내도를 행정구역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은 대부분 일정한 축척도 없고 그 경계선이 매우 불명확한 실정임

- 행정구역도는 행정업무에 두루 쓰이는데, 특히 사회의 지표가 되는 각종 사회·경제 통계자료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때 유용함

#### 라. 도로망도

- 도로법 제11조에 따르면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면·리간 도로, 부지안도로 등으로 구분됨
- 도시내의 도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며 일반도로,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으로 구분됨(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 폭원별로 분류하면 광로1류, 광로2류, 광로3류, 대로1류, 대로2류, 대로3류, 중로1류, 중로2류, 중로3류, 소로1류, 소로2류, 소로3류로 세분됨(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3항)

#### 마. 주요건물

- 건물이란 사람이 살고 있거나 또는 살 수 있는 가옥을 말하며 건물 유사구조물 또는 부속건물도 이에 포함됨(지도도식규칙 40조)

#### 바. 지적도

- 지적(임야)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도면임(지적법 제1조, 제10조)

#### 사. 수치정사사진지도

- 사진을 집성하여 지도처럼 만든 것을 사진지도(photo map)라함
- 사진지도는 일반 지형도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조사용으로 특히 유용함
- 사진지도는 사진변위의 수정방법에 따라 약조정집성사진지도(略調整集成寫真地圖), 반조정집성사진지도(半調整集成寫真地圖), 조정집성사진지도(調整集成寫真地圖), 정사투영사진지도(正射投影寫真地圖)로 구분됨

#### 아. 토지이용현황도

- 현재 국립지리원에서 발간되는 토지이용현황도는 1/25,000 지형도상에 표현된 물리적 토지이용상황을 채색하여 그 이용상태를 나타내어 작성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3,000~1/10,000 축척으로 토지이용현황도를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음

#### 자. 지질도

- 지질단면도는 각각의 개별관정들의 지질주상도를 상호 연결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하의 지질분포상태를 비롯한 대수층의 연결상태, 지하수위 분포, 구성지질에 따른 지하수 산출특성, 층서(지층의 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차. 토양도

- 토양에 대한 조사 분석은 모든 환경계획 수립의 기초적일 뿐만 아니라 토양조사 자료를 기본으로하여 토지의 이용가능성과 이용정도가 평가됨

#### 카. 산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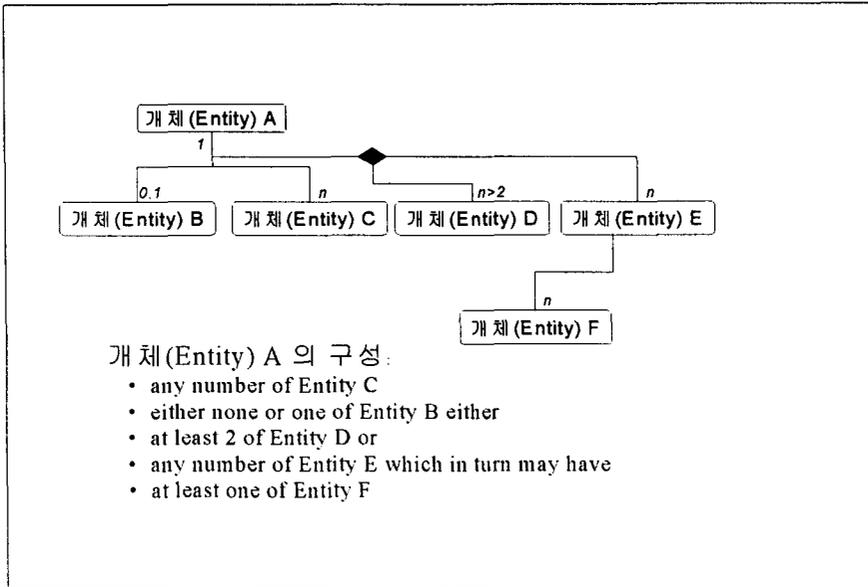
- 산림의 상황, 장기산림정책의 방향, 경제·사회여건의 장기전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산림의 보호육성 및 산림의 경영기반의 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2.2.3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데이터모델

#### 가. 데이터모델

- 데이터 모델이란 실세계의 현상에 대한 이상적인 표현임
- 실세계의 관심 대상물에 대한 표현 또는 대상물 사이의 논리적인 구조와 제약조건 및 상호관계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들을 상호 연관시키는 방법을 정의한다거나,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 등도 데이터 모델에 포함됨
- 개념적 데이터 모델
  -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내용, 즉 일반적인 형식이나 기능 등을 설명함
- 논리적 데이터 모델
  -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될 개체와 각각의 개체에 대한 일생 정보(life history)를 설명함
  - 표현하고자 하는 개체의 종류 및 형태, 속성 정보의 표현방법 및 값의 범

위, 개체들 사이의 관계 등을 정의함



<그림 3> 개체-관계 모형 다이어그램의 예

○ 의미적 데이터 모델

- 의미적(semantic) 데이터 모델은 실세계의 객체들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여줌

○ 기존 수치지도 데이터 모델 : 현재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에서 구축되고 있는 세 가지 축척의 수치지도에 대한 데이터 모델은 개념적 수준(conceptual level)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세 가지 축척의 수치지도는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 모델을 가짐
- 수치지도 데이터는 도엽 단위로 저장되며, 개별 도엽의 지형적인 범위는 축척에 따라서 달라짐
- 수치지도 데이터는 도엽 별로 한 개의 파일에 저장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DXF level 코드로 구분됨
- 각각의 지형지물에는 오직 한 개의 속성정보나 지형지물 코드가 부여됨

○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데이터 모델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함

-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점, 선, 면 등의 지형지물(feature)을 요소(element)로 개념화하여야 함
- 위상(topology)구조가 표현되어야 함
- 지형지물의 도형적 표현방식(graphic representation)은 해당 지형지물이 속한 theme과 관련을 가져야 함

### 3. 데이터 클리어링 하우스

#### 3.1 국외 현황분석

##### 3.1.1 미국의 사례

###### 가. 연방지리정보위원회

###### 가) 개요

-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 :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는 국가 공간정보(geospatial data)의 연계성있는 개발·사용·공유·보급을 장려하는 정부기관의 위원회로서 1990년 관리예산국(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협조문서(Circular A-16 : Coordination of Surveying, Mapping, and Related Spatial Data Activity)에 의해 설립되었고, 14개의 내각 및 독립적인 연방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됨
- 관리예산국은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개발에 기여할 다양한 주제별 공간정보의 연계를 위해 연방지리정보위원회의 기관들에게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조직구성은 연방지리정보위원회 부위원회의 조직구조에 반영되었음
- 또한 연방지리정보위원회의 운영그룹(working group)들은 데이터의 보전을 위한 지침의 제정, 정보센터의 설치, 프레임워크데이터의 생성, 운영과 데이터 표준의 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6>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의 조직

Chair	Bruce Babbitt, Secretary of the Interior
Department of Agriculture	Tom Hebert, Deputy Under Secretary for the National Resource and Environment
Department of Commerce	Diana H. Josephson, Deputy Under Secretary for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Defence	Corepresentative : Steven Stockton, Chief, Engineering Division, Directorate of Civil Works, U.S. Army Corps of Engineers, and Walter Senus, Chief Scientist, Defence Mapping Agency
Department of Energy	Jay Hakes, Administrator,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Richard Burk, Community Connection
Department of Interior	Mark Schaef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Water and Science
Department of State	William B. Wood, The Geographer
Department of Transport	T.R.Lakshmanan, Director,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l Pesachowitz, Acting Assistant Administration and Resource Management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Dennis DeWalt, Deputy Associate Director, Operations Support Directorate
Library of Congress	Ralph Ehrenberg, Chief, Geography and Map Division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Dixon Butler, Director, Operations, Data and Information Division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Kenneth Thibodeau, Director, Center for Electronic Records
Tennessee Valley Authority	Alan Voss, Project Engineer, Geographic Information and Engineering Department

#### 나) 연방지리정보위원회와 국가공간정보기반과의 관계

-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시행령 12906(Coordinating Geographic Data Acquisition and Access :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을 통하여 국가정보기반구축 지원을 위한 협조문서(Circular A-16)를 시달하였음
- 즉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은 공간정보의 획득·처리·저장·보급과 이용의 개선을 위한 기술·정책·표준·인력자원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고,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는 주·지방정부와 학계, 민간부문의 참여유도,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연계, 위원회들과 운영그룹(working group)을 통한 국가공간정보기반내 중요영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지원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원사업으로 공간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설, 공간정보의 공유를 위한 표준의 개발, 기본적인 주제별 데이터에 대한 국가적 수치지 공간정보 프레임워크의 생성, 연방부문 외의 파트너들 사이에 공간정보에 대한 공동투자 와 비용의 공동부담의 장려 등을 촉진하고 있음

#### 다. 연방지리정보위원회의 활동

-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의 위원회와 운영그룹들은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의 구축에 관계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작업하기 위해 기관과 개인들에게 기본적인 임무를 부여
- 최근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국가적 포럼 지원, 이용자 교육자료의 개발과 워크숍 개최, 프레임워크데이터의 개발에 주·지방정부와 학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허가프로그램의 제정, 수치지공간정보 메타데이터 표준(content standard for digital geospatial metadata)의 개발 및 채택, 표준의 개발과정을 정의하기 위한 관련모델의 개발, 정보센터의 지속적인 지원, 제시된 방안의 테스트와 계획의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 시험 프로젝트의 평가와 프레임워크 계획 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활발한 지원활동을 추진

#### 나.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 가)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 1994년 4월 11일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령 12906호 "지리정보 구득 및 접근의 조정 : 국가 지형공간 정보기반"을 발표한 이후, 이 명령에 의해 연방기관들은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에 대한 참여의 일환으로 유통기구를 이용해 지리정보를 공급
- NSDI의 일환으로 유통기구는 정보 공급자에게 어떠한 지형공간 정보가 존재하며 그 정보의 상태 및 접근에 필요한 안내를 제공

- 각 정보 공급자는 전자적인 형태로 가용한 정보를 기술(記述)하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네트워크 상에서 이러한 기술내용(혹은 메타데이터)을 제공
- 유통기구에 기술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공급자 사이트에 있을 수도 있고 전국에 걸쳐 위임을 받은 정보 배포 사이트에 있을 수도 있음
- 유통기구는 지형공간 정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컴퓨터 노드를 연결하는 인터넷을 이용
- 유통기구는 수천의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그 전체적인 비용을 알 수도 없을뿐더러 추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움
- 비용은 해당 기관들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정보 생산자가 최초 부담할 것임

#### 나) 정보 인프라 및 유통기구 설치

-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지리정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995년 4월까지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를 만들고 시민 각자가 서기 2,000년에는 정부의 각종 공간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
- 이에 따라 1994년 11월 4일 미 대통령은 시행령 12906(Coordinating Geographic Data Acquisition and Access :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을 승인하고, 연방기관들이 1995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공간데이터는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국가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National Geospatial Clearing House)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지시
- 이 명령으로 공간정보 유통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라고 불리는 전자 네트워크가 설치되고, 정보생성, 편집, 정보의 용이한 교환을 위한 표준이 제정됐으며, 공간정보유통을 위한 관·산·학·연의 파트너쉽 구축방안을 강구
- 이 기구에서는 공간정보의 제공자(Producers)와 관리자(Managers), 그리고 이용자(Users)를 인터넷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공간정보 이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메타데이터 및 송수신 표준(Transfer Standard)의 제정, 표준화 관련작업의 수정 및 관리, 국내외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작업 수행

#### 다) 미국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가입요건

-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Geospatial Data Clearinghouse)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메타데이터를 연방표준에 맞게 제작

- 다양한 형식으로 색인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하드웨어가 필요함
- GMP(Geospatial Metadata Profile)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Z39.50서버가 제공되어야 함
- 메타데이터를 Z39.50 서버에 연결하여 인터넷에 등록(upload)하도록 함
- 연방지리정보위원회에 등록해야함

#### 다. 미국식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의 장점

- 미국의 공간정보관리기구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의 강력한 추진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이용자의 편의 추구
- 또한 간편한 노드 설정으로 누구나 공간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공간정보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 증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공간정보유통의 극대화 실현

#### 라. 국내 도입시의 문제점

- 우리 나라는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 직속기관이 없고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의 부처간 소관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 및 추진 행정력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
- 국가기관에서 생성된 정보의 유통은 제도화시킬 수 있다 해도, 민간업체나 대학교 및 연구소에서 생성된 각종 정보의 공개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부재로 인해 정보공개에 기피 가능성이 있고, 또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정책과 부대기능-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수립, 네트워크의 보수 및 유지기능,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기능 및 유통기술증진 기능 등을 관장하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

#### 마. FGDC 유통기구 노드 구축 현황

##### 가) 국가 지형공간정보 유통기구 노드의 필요성

-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NSDI의 유통기구 노드}의 하부구조적 정의를 확고히 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현재 미국은 네트워크상의 공간정보서비스는 증가하는 반면 그러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구체적인 국가 지형공간정보 유통기구 노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나) 브라우저(Browse)와 검색(Search) 기능의 차이

- 현재 미국의 대다수 공간정보 서비스들은 그 공간 메타데이터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웹서버만을 제공
- 그런데 이러한 웹을 이용해 공간정보를 검색할 때는 타 정보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 발생
-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로 anonymous FTP site를 검색해주는 Archie라든지 고퍼 서비스 경우 Veronica 등이 등장하였으며, 웹에서도 수많은 웹 인덱스(search engine이라고도 함)가 등장함
- 즉 on-line HTML 파일 문서의 변화를 인덱스해 사용자들에게 깊은 수준에 존재하는 서버의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제공함

## 다) 연방정부의 수치공간정보 서비스관련 근거

- 대통령령 제 12906호 (1994.4.11)
  - 대통령령은 유통기구의 기술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이 단지 그것을 {지형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이용자를 전자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분산 네트워크}라고 부름
  - 국가정보기반과의 호환 및 연방지리정보 위원회가 개발한 표준을 이용하는 것 등과는 달리 대통령령은 그 집행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 유통기구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
- 예산관리국 회람 A-130 (1993년개정)
  - 이 문서는 많은 정부보유 정보들을 일반 및 여타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됨
  - 이 문서는 배포기구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정보 배포기관이 그 배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정보의 초기 수집과정에 든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함
- 정부정보제공서비스(GILS)
  - 최근 정보 제공서비스(GILS)는 연방정보처리표준(FIPS)을 정보수집의 공식 방법으로 승인함. GILS는 Z39.50 서비스 규약의 이용과 특히 검색할 때 언급될 수 있는 대략 20개 정도의 속성을 규정
  - 물론 GILS의 모든 필드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GILS는 FGDC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채택한 경계부 사각형과 폴리곤에 대한 공간적 요소를 포함
  -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침들이 수치공간정보를 검색하고 도출하기 위한 인터넷 해결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긴 하나 어떻게 방대한 공간 메타데이터

- 및 데이터에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 못함
- 따라서 현재 FGDC에서는 공간정보에 대한 인터넷 검색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유통기구 서비스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점으로 지적
  - o 인터넷 상에서 "검색"과 "웹 브라우즈" 양자 모두를 지원해야함
  - o 상호 호환성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와 연산자(operator)를 이용해야함
  - o 가능한 많은 이용자 커뮤니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능력을 제고해야함
  - o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업데이트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함
  - o 하나의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에서 다수의 서버에 이르기까지 분산 검색이 제공되어야함
  - o 검색결과를 예측 가능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어야함
  - o 지원 자료형태 및 추출(공간 사상으로 수집수준 하향) 수준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함

### 3.1.2 영국의 사례

#### 가. 영국지리원

- 영국지리원(OS : Ordnance Survey)은 영국의 국립지도제작기관으로 1791년에 설립되어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도를 만들어 왔음
- 또한 영국지리원은 1990년 5월 1일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구성되었으며, 현재 환경부산하의 공식적인 영국의 측량 및 지형도 작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민간기구 성격으로 변신하고 있음
- 영국지리원은 영국 전역에 대한 지형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비용 회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음
- 영국지리원의 장기목표를 살펴보면 타 공간정보에 국가지형데이터베이스(National Topographic Database)를 연결시킴으로써 양질의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장개척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완전한 투자비용회수를 추구하며 융통성 있는 자원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동일분야의 데이터 제공자들과 사용자들간의 공동작업 수행, 지도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는 영국 지형에 관계된 공공기록 보호, 관련 제약조건 기록 및 재판 편의분석 실시, 측량·지도작성·GIS에 관한 정부자문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 등 민영화에 주력하고 있음

## 나. 영국지리원의 활동사항

### 가) 국가지도제작기관(National Mapping Agency)의 역할

- 영국지리원은 국가 측량·지도제작 기관으로서 현재 6개의 사업부내에 2,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인공적 환경과 경계에 관한 속성들의 명확한 기록을 제공
- 사우스햄턴(Southampton)에 위치한 본원에서는 지도제작·인쇄와 관련된 서비스·마케팅·계획·정보기술·연구 및 개발·행정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제작된 지도와 데이터베이스는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스(Wales)의 본원에서 갱신과정이 수행

### 나) 제공되는 서비스

- 영국지리원의 주요활동은 고객들에게 영국 전역의 지형 및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갱신을 위해서 측지·측량 등의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
- 영국지리원의 새로운 제품개발과 서비스의 개선은 관·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수행됨
- 또한 해외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에 자문과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럽연합과 같은 해외시장에 지도 관련서비스를 제공함

## 다. 영국지리원의 국가지형데이터베이스

- 1995년 4월 영국 대축척지도를 전산화하였으며, 1995년 말에 모든 수치지도를 인접접합(edge-matched) 데이터셋으로 전환함으로써 데이터 개선 프로그램을 완성
- 한편, 영국지리원은 데이터에 대한 장기간의 재처리 과정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국가지형데이터베이스(NTD : National Topographic Database)를 재구축하고 있음
- 현재 국가지형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규정은 시험구축단계에 있고 데이터의 관리 및 전환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소규모지역의 지도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음

### 3.1.3 호주·뉴질랜드의 사례

#### 가. 호주의 국가네트워크 구상

- 호주는 2,000년까지 몇 가지 네트워크 보급 계획
- 정부는 1997년 이후 정보를 보급하고 공공의 문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인터넷과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채택하고,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운송 및 개발, 상업정보의 습득, 생산과정의 협력 등을 위해 기업들이 정보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도하게 할 예정임
- 2,000년까지는 기본 네트워크 서비스가 호주 전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보급되도록 하고 상업용 게이트웨이(gateway)를 통해 상업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할 예정임

#### 나.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의 역할

##### 가)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

-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ANZLIC : Australia New Zealand Land Information Council)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지리정보와 지리좌표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최고의 정부 부처간 회의로서 토지 및 지리정보(land and geographic information) 관련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토지 및 지리정보의 효율적인 생성·관리·저장 및 전송을 위한 정책과 표준 및 절차에 대한 개발이 국가 토지관련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곧 국가의 복지와 직결된다는 인식에 의해 발족됨
-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는 본래 1986년 6월에 호주 수상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의 합의하에 호주토지정보심의회(ALIC : Australia Land Information Council)가 설립되면서 시작
- 호주토지정보심의회는 정부간 토지정보를 교환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의 이용을 장려
- 뉴질랜드는 1987년부터 호주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호주토지정보심의회(ALIC)에 참여하였고 1991년 11월에 공식적으로 정회원이 되었으며 따라서 위원회의 명칭도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ANZLIC)로 바뀜
-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ANZLIC)는 각 주의 토지정보기관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문위원회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제성장,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 및 지리정보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한 업무와 데이터, 기간시설, 표준, 접근, 상업개발, 조직의 기본틀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프로젝트 수행

## 나) 메타데이터 구축의 배경

- 호주와 뉴질랜드의 연방 토지 및 지리정보디렉토리시스템 개발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수행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고려하면서 토지·지리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을 극대화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은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의 목표달성에 기여
- 최근에는 토지 및 지리정보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모든 데이터의 특성을 담은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인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
-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 4월에 고문위원회에 의해 운영위원회(working group)가 형성

## 다) 메타데이터의 교환에 대한 정책

- 1994년에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ANZLIC)는 메타데이터의 교환에 대한 정책 채택
- 이 정책은 디렉토리시스템 내에서 이용되는 최고수준의 메타데이터를 각 주와 연방정부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 정책에 의해 각 주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핵심 메타데이터를 연방 디렉토리에 제공할 것이며 이에 따라 메타데이터는 연방 디렉토리로부터 각 주의 디렉토리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 메타데이터의 구조는 모든 이용자가 핵심 메타데이터에 쉽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주에서 정립되어야함

## 다. 호주·뉴질랜드 토지정보위원회의 메타데이터 구축 및 운영

-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목적은 기존데이터를 다른 목적에 재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임
- 토지 및 지리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수집목적과 적용범위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의
  - 데이터의 수집·통합·분석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
  -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원자료의 정확도에 대한 정보
  - 축척의 전환과 다른 기관과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필요한 투영법규정 및 데이터 디렉토리에 관한 정보
  - 기존의 데이터 사용자가 다른 목적에 데이터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내용·질과 지리학적 범위에 대한 정보

- 디렉토리 시스템 내의 관련정보 뿐만 아니라 내용·질에 대한 요약정보

- 데이터의 질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필수적이지만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의 타입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의 구성요소가 상이할 수 있음
- 그러나 조직내의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상세한 메타데이터와 구성요소의 범위가 필요하다. 메타데이터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다양한 반면 공통적인 핵심 요소들은 데이터의 타입이나 상세한 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음

### 3.1.4 캐나다

가. 정보유통기구의 구상

가) 공간정보유통기구의 개요

- 캐나다의 경우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어 1960년대 세계에서 최초로 GIS가 도입됨
-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변환 및 유통(전송)에는 표준화를 통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 독특한 데이터 전송 기술개발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현재 GIS에서는 WAN(Wide Area Network)을 통한 분산된 공간 DB를 연계시키고, 이에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GIS DB의 통합을 시도
- GIS의 상호 이질적인 환경이 가져다주는 문제점에 직면하여 캐나다에서는 공간 데이터 유통의 해결방법으로 표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Delta-X 시스템과 MetaView시스템을 구상하게 됨
- Delta-X 시스템은 통합된 공간정보시스템(Federated 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코드 이름이며, 상호 이질적인 DB의 네트워크 내에서 상호가동성(Interoperability)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 방법임
- Delta-X는 서로 다른 관계형 DBMS, 객체형 DBMS, 파일구조 사이에서 상호가동성을 가능하게 부여함
- Delta-X 시스템 하에서 사용자가 DB에 접근할 수 있는 역할은 MetaView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데, MetaView는 일종의 공간 메타데이터 브라우저로 다양한

DB의 메타데이터에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

- 캐나다의 공간정보의 유통이 이와 같은 Delta-X와 MetaView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화에 근거하지 않은 해결방안을 채택함

#### 나) 공간정보유통의 기술개발 배경

- Geomatics Canada에 GIS와 관련 서비스 분야가 설립된 것은 1987년으로 Geomatics Canada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GIS 기술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 초기 Geomatics Canada의 관심은 개선된 통신시설을 통해 GIS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GIS 데이터의 주문과 유통에 필요한 공간정보기반시설의 기술을 개발
- 1988년 Geomatics Canada내에 '국가 GIS 기술센터'(National GIS Technology Centre)가 설립되고, 몇몇 GIS 업체(vendor)로부터 GIS S/W, H/W 등이 기증됨
- 국가 GIS 기술센터는 PC, UNIX 등의 H/W가 LAN으로 연계되었고, GIS S/W와 H/W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GIS 환경하에 DB가 저장됨
- Geomatics Canada의 국가 GIS 기술센터에서 공간정보유통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인 Delta-X와 MetaView가 탄생될 수 있었던 계기는 여러 이질적인 GIS 환경의 DB에 대한 문제점의 대두에서 시작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Delta-X 시스템으로 이는 통합화된 다차원의 DB체계임

#### 나. 공간정보유통기반의 구축

##### 가) Delta-X 시스템

##### (가) Delta-X 공간데이터 모델

- Delta-X는 다른 GIS 표현이 지도화될 수 있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conceptual data model)에 해당
- 개념적 데이터 모델로서 Delta-X는 서로 다른 GIS간의 데이터 전송을 매개적 전환을 통하여 가능하게 하며, 관계형 DBMS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Delta-X 서버가 관계형으로 유지하고, 객체형 DBMS에 대해서는 객체형으로 유지할 수 있음

- 즉 여기서 중요한 점은 Delta-X 서버가 데이터를 같은 DB 형태로 전달하기도 하며, 또한 클라이언트 GIS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임
- 데이터 형태로 벡터, 이미지, 텍스트 등에 관계없이 접근이 가능하며, 서로 다른 표준포맷을 갖는 파일을 같은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 유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줌

(나) 공간지표(Spatial Index)

- Delta-X에서는 소규모의 커버리지 지역도 모든 데이터 형태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가지면서 빨리 거대한 DB의 형태로 전개됨
- 이는 Delta-X가 공간을 계층적 격자모양(tessellated)의 지역으로 조직화하고, 정의된 공간내에서 도형(feature)을 확인하는 인덱스체계를 갖기 때문이며, 인덱스체계는 두 가지 차원의 개념하에 구성되어 있음
  - 첫 번째 인덱스 : 첫 번째 인덱스는 그리드 형태로 계층화된 바둑판 형태의 커버리지 지역의 폴리곤의 셀을 확인하는 역할 수행
  - 두 번째 인덱스 : 두 번째 인덱스는 각 셀내의 도형을 다른 정보형태와 결합하는 역할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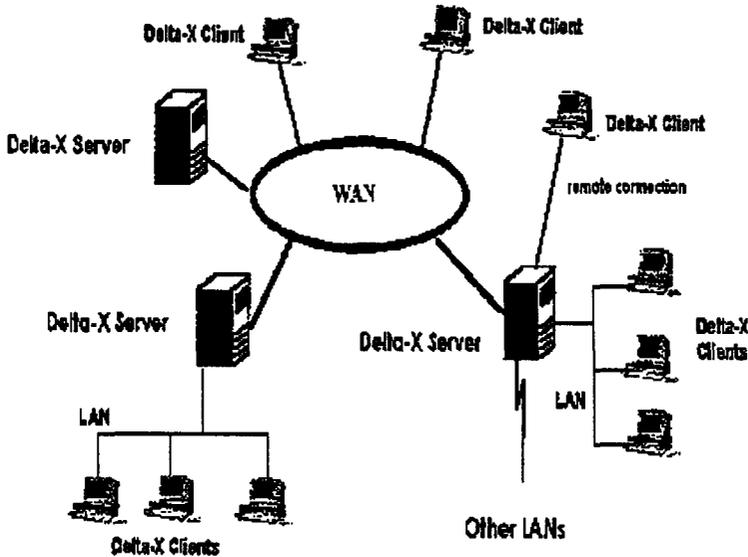
(다) Delta-X 특성 및 서비스

- Delta-X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서버의 역할 수행
  - Delta-X 서버는 상업적 DBMS 시스템내에서 데이터 저장에 관한 통제를 수행
  - Delta-X는 클라이언트/서버 처리과정 시스템이며, Delta-X DB와 다른 서버 및 클라이언트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 수행
  - Delta-X는 내부 데이터 교환 포맷간에 데이터 전환과 같은 특수한 서버 기능들을 수행
  - Delta-X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GIS 시스템을 위하여 대리 클라이언트로서 역할을 수행
- Delta-X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구성요소 기능으로 Delta-X는 GIS 사용자들이 데이터의 전송과 변환을 제어할 수 있는 GUI를 제공하며, 서버와 연계할 수 있는 S/W의 접근이 가능

(라) 네트워크 외부형태

- Delta-X의 외부형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음
-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WAN에 의해서 연계되면서 클러스터(cluster)의 형태를 나타내는 모습이 Delta-X 외부형태의 중추적 형태임

- 연결체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통신은 TCP/IP에 의해 이루어지며, 어떠한 클라이언트라도 연결된 어느 서버와도 데이터 처리과정이 가능



<그림 4> Delta-X 시스템의 구조

- Delta-X Master라 불리우는 하나의 정교한 서버가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다른 서버들의 활동들이 모니터링됨
- 즉 하나의 서버가 Delta-X 체계와 연계하거나 접속을 끊을 때, Delta-X Master가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 또한 데이터 전환 및 전송은 유닉스 워크스테이션 뿐만 아니라 PC와도 연결되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 Delta-X는 대화식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다른 서버에 연결되어 데이터 처리를 요구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연결이 끊어지고 서버가 데이터 처리를 마친 후 다시 클라이언트에 데이터의 상태 및 전달을 하는 대화식 형태임

(마) 클라이언트 서비스

- Delta-X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S/W로서 사용자의 기계를 작동시키고, Delta-X 사용자로 하여금 Delta-X 데이터 변환 및 처리를 통제함

- 또한 Delta-X 클라이언트는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데, Delta-X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으며, 데이터에 접근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볼 수도 있음
- Delta-X 서버내에 있는 Administration GUI는 사용자 하여금 데이터 변환과 전송에 대한 변수를 선택하게 하면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며,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줌

#### 나) MetaView

- MetaView는 GIS 공간 브라우저로 Delta-X에 GIS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DB의 메타데이터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임
- MetaView/GIS는 인터넷상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서버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유닉스 워크스테이션 즉 하나의 GIS이며, 서버는 MetaView의 장소(site)에 해당됨
- 대부분의 인터넷상의 클라이언트/서버 디렉토리는 WAIS(Wide Area Information Server), WWW(World Wide Web), Archie, Gopher 등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의 장소를 찾고, 그곳으로부터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얻게됨
- 하지만 MetaView/GIS는 다른 클라이언트/서버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줌
  - MetaView/GIS는 상업적 서비스 기능을 하는 Delta-X의 일부분으로서 서비스가 제공
  - hypertext 시스템이 아닌 상업적 DB 운영체계에 따른 X11 그래픽 사용자들을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
  - 사용자는 공간적 검색의 이용이 가능
  - dataset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다른 클라이언트/서버와는 다름

#### 다) 캐나다 지리정보 유통 방법의 특성

- 캐나다의 지리정보 유통방법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상호 이질적인 GIS 환경의 문제점을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 유통의 기술 개발
  - 미국의 상업적 표준으로서 주목을 받는 Open GIS의 상호가동성의 맥락에서 데이터 변환 및 전송기술이 개발되어 통합된 유통 방법 마련
  - 다양한 DBMS간에 상호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합된 DB 시스템으로서 Delta-X 개발
  - GIS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MetaView 개발
  - Delta-X와 MetaView의 개발로 데이터 포맷, DB 저장 형태, DB구조(관계형,

객체형 등), S/W, H/W의 이질성에 관계없이 데이터의 변환 및 전송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 GIS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GIS 사용자가 안심하면서 현재의 GIS 시스템을 사용하여 DB를 구축할 수 있게됨

### 3.1.5 국외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현황 비교

<표 7> 미국, 영국, 호주·뉴질랜드의 공간정보유통관리 현황 비교

	미국	영국	호주·뉴질랜드 (계획)
개발주체	FGDC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OS (Ordnance Survey)	ANZLIC (Australia New Zealand Land Information Council)
형태	무형	유형	무형
개발비용	국가(세금)	이용자	국가
한계비용	이용자	이용자	이용자
유통	인터넷 활용	네트워크 활용	인터넷 활용
관리	메타데이터의 제공자가 개별적으로 관리	책임기관이 일괄적으로 관리	미국과 영국의 중간형태
메타데이터	대규모	필요성 인식	소규모
특성	·시스템의 구축·관리·이용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시스템 개발비 이외의 추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음	·시스템의 개발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완전한 비용회수를 목표로 함	·시스템의 기본들은 미국 방식을 택하면서도 운영 시에는 영국의 방식을 가미하고 있음

## IV. 추진전략

### 1.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추진 방안

#### 1.1 NSDI 구축 추진협의회(가칭)

##### 1.1.1 NSDI 구축추진협의회 개요

- 미국의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와 같은 기관이 국내에서도 필요함
- 국가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해 가칭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함)'를 구성해야 함
- 추진협의회의 운영그룹들은 데이터의 보전을 위한 지침의 제정,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생성, 운영과 데이터 표준의 개발을 수행하며, 데이터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1.1.2 추진협의회와 국가공간정보기반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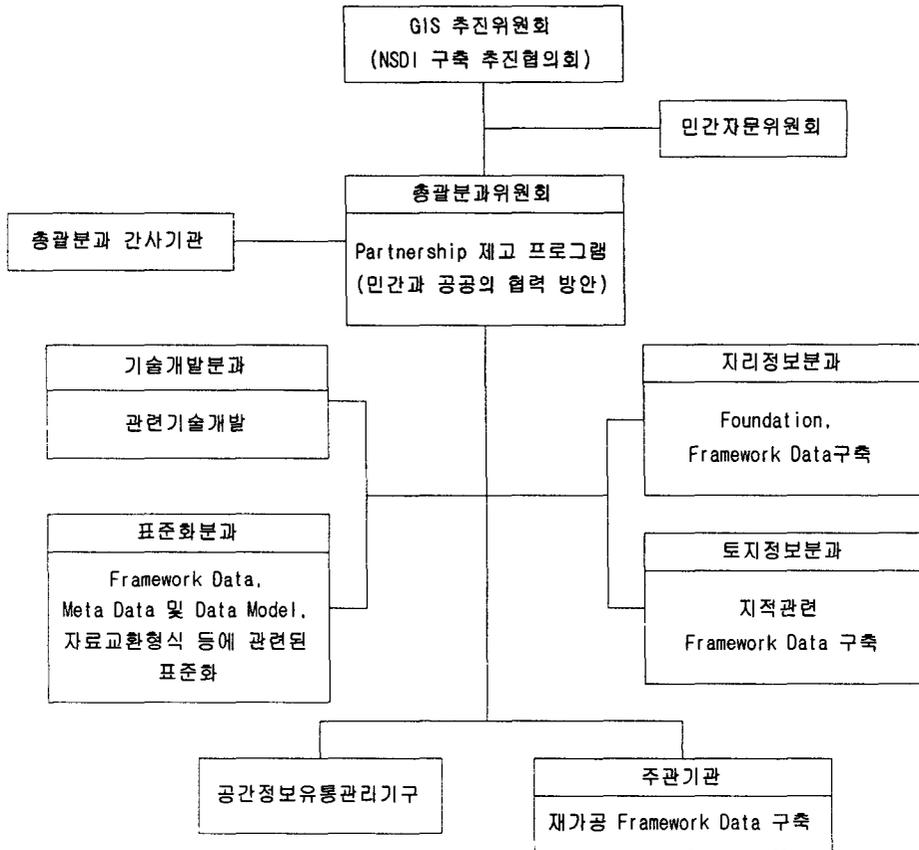
- 국가공간정보기반은 공간정보의 수집·처리·저장·보급 및 이용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정책·표준·인력자원 등을 포함하며, 추진협의회는 각 지자체와 학계,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연계를 수행하며, 운영그룹을 통해 국가공간정보기반내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공간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설, 공간정보의 공유를 위한 표준의 개발, 기본적인 주제별 데이터에 대한 국가적 수치공간정보 프레임워크의 생성, 공간정보 생성을 위한 자원투자 및 자원부담에 대한 장려 등을 추진

### 1.1.3 추진협의회와 활동

- 추진협의회와 운영그룹들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구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작업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개인들에게 기본적인 업무를 부여해야함
- 공간정보에대한 국가적 포럼 지원, 이용자 교육자료의 개발과 워크샵 개최,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개발에 각 지자체와 학계, 연구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제정, 수치공간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의 개발 및 채택, 표준의 개발과정을 정의하기위한 관련모델의 개발, 정보센터의 지속적인 지원, 프레임워크 구축계획 수립 등의 분야에 대한 활발한 지원활동을 추진해야함

## 1.2 추진협의회와 NGIS 계획과의 관계 설정

- 현재 NGIS 추진위원회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총괄, 지리정보, 토지정보, 표준화, 기술개발)가 운영되고 있음
- 추진협의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NGIS 추진조직상에 존재하는 NGIS 추진위원회의 성격을 재정립하여 NSDI의 구축의 실질적인 추진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존의 NGIS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NSDI 구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분과위원회에 NSDI의 핵심요소 구축 기능을 부여하고 현행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료 유통관리부분은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설립방안(3.4절 참조)을 토대로 구성함



<그림 5> NSDI 구축 추진협의회 구성(안)

## 2. 프레임워크 데이터 구축 전략

### 2.1 국가의 역할

- 프레임워크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러 기관간의 협조가 필수적임
- 국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국가적인 정보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정보수집과 분산을 위한 공간정보 유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의 교환방식, 명세, 절차와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구축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이들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의 지원 및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프레임워크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공간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부처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2.2 추진목표

-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함
  - 측지기준의 정비는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완성
  - 등고선 프레임워크의 제작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완성
  - DEM 프레임워크의 제작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완성
  - 주요건물 프레임워크의 제작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완성
  - 수계 프레임워크의 제작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완성
  - 도로 프레임워크의 제작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완성
  - 법정경계선 프레임워크의 제작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완성
  - 해안선 프레임워크의 제작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완성
  - 수치지상사진지도 프레임워크의 제작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완성
  - 제작된 프레임워크 데이터 갱신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
  - 필지 경계선 프레임워크의 제작은 행정자치부의 별도 사업으로 시행

## 2.3 추진절차

-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구축은 총괄분과위원회의 추진하에 지리정보분과위원회와 토지정보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함
- 총괄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시행지침 마련
- 지리정보분과위원회에서는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내용 중 지적관련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시행
- 토지정보분과위원회에서는 지적관련사항에 대한 사업 시행
-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는 프레임워크 데이터 구축에 관련된 각종 표준화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결정
- 2차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제작은 각 주관기관에서 제작된 프레임워크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4 추진주체

- 짧은 시간안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내에서 프레임워크 데이터 구축을 위한 역할을 부가적으로 정의해야 함

- 수치지형도에서 추출·가공하여 구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데이터는 지리정보분과에서 담당하고, 필지경계선은 토지정보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임
- 프레임워크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모델, 효율적인 정보 유통과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및 자료교환형식 등의 표준에 대해서는 표준화분과에서 담당해야 함
- 프레임워크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선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연구는 민간자문위원회나 간사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이외에 프레임워크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관리기관 등 공간정보 생산·수요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며, 이 협의체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추진체제에는 없는 하부조직으로 새로 구성해야 함
- 이 협의체를 통하여 프레임워크 데이터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며, 프레임워크 데이터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협의 조정함. 궁극적으로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구축은 제 2단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함

## 2.5 추진일정

- 1차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구축은 약 2004년경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차 프레임워크 데이터의 구축은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제작하며, 그 세부 구축일정(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8> 년차별 프레임워크 데이터 구축 추진일정(안)

비 고	종 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차 프레임워크 데이터	측 지 기 준	측지기준							
	표 고	등고선							
		DEM							
	수치정사영상	수치정사 사진지도							
	주 요 건 물	주요건물							
	수 계	하천 중심선 및 하천 경계							
	도 로	도로 중심선 및 도로 경계							
	행 정 경 계	법정경계선							
		해안선							
지 적	필지 경계선	행정자치부의 별도사업으로 추진							
데이터 갱신	프레임워크 데이터 갱신								
2차 프레임워크 데이터	지 질								
	토 양								
	토 지 이 용								
	산 림								

### 3.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 3.1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의 역할

- 국내에 설치하게 될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는 공간정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도형정보와 그에 수반되는 제반 속성정보들의 구축, 관리 및 보급 등 각종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정보공급자와 최종 수요자 사이에서 기본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해야함
- 또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관련 실험연구과제의 수행, 지리정보 유통 응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메타데이터 등 공간정보표준의 보급촉진 등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사업의 밑거름 역할을 수행해야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지리정보 관련사업에 대한 자문, 관산 학연간의 지리정보협의체 운영, 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 범 부처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적극 추진

#### 3.2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의 설치요건

##### 3.2.1 기술적 요건

- 국가GIS 추진위원회는 1995년 12월에 이미 교환표준을 미국표준인 SDTS(Spatial Data Transfer Standard)로 채택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지형공간 대상물(Spatial Feature)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하도록 정함
- 공간정보의 유통을 위해서는 많은 이용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분산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S/W의 개발이 필요함
- 미국의 Clearinghouse 노드에 연결하려면 Z39.50 서버에 연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Z39.50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검증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우리실정에 맞는 S/W의 개발이 요구됨

##### 1) 분산 네트워크시스템 (Distributed Network System)

- GIS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의 교환 및 필요기능의 분담수단이 필요함
- 이러한 수단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 "server-net" 시스템임(Vonderohe, 1993)
- 이 모형의 주된 개념은 'GIS는 한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정보분야 기술의 빠른 변화, 일의 분업화된 성격, 과업 정보 요구량의 과밀화현상, 이용자간의 정보교류에 따르는 시간적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IS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임

- 서버넷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네트워크상의 결절점들은 각기 특성화되어 계산작업을 분산 수행
  - 각 결절점들은 각자가 다른 결절점에 대한 server임과 동시에 client임
  - 결절점들은 특성과 능력이 다양하여, 슈퍼컴퓨터와 개인용 컴퓨터가 공존할 수 있음
  - 네트워크는 수천개의 컴퓨터로도 구성될 수 있음
-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한 번에 구축할 수 없으므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네트워크 결절점에 많은 기능을 집중시키고 이를 기초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도록 함

## 2)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연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대민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하여 실시되므로 국가차원에서 정보를 수집·관리, 유지·보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가GIS구축사업과 기존의 국가기간전산망사업들에 대한 연계방안 강구가 필요함
- 각 부처의 행정전산망체계내에 정보수집·관리 기능을 첨가하고 이를 국가GIS구축망과 연계시키도록 하며,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의 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 연계로 도면정보등을 신속히 유통시키도록 함

### 3.2.2 기본법의 도입

- 공간정보관리기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의 공간정보 유통체계 및 관련법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공간정보 관리 및 유통체계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져야함
- 공간정보관리기본법의 기본적인 구성은 총칙,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의 촉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가지리정보의 관리, 지리정보기술 및 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촉진기금 조성, 기타사항 등으로 구성
-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정부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추진 기본원칙 등을 정리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의 촉진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수립·시행 및 조정, 관련 기관간의 업무협조·지원, 국가지리정보의 제공·교환·유통,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추진위원회 및 각종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및 GIS 전문연구기관들의 육성 등에 관해서 정리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부분에서는 국가지리정보의 내용체계확립(도형정보, 속성정보, 위상정보), 국가지리정보의 데이터베이스구축, 국가지리정보의 제작 및 갱신, 국가지리정보의 공급·유통체계 등에 관해서 정리
- 국가지리정보의 관리부분에서는 국가지리정보의 관리주체·조직·업무·기능, 국가지리정보의 저장·보호, 국가지리정보의 공급·이용, 국가지리정보의 품질·정확도관리, 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변경된 지역의 지리정보 수정제작·제출(택지개발, 도로개설, 상수도, 지하시설물매설등 개발주체가 의무적으로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
- 지리정보기술 및 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부분에서는 지리정보산업의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개발·지원, 지리정보 기술인력의 양성, 지리정보의 표준화 추진, 지리정보산업의 육성 및 기술지도 등에 대해 다루게됨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촉진기금 조성부분에서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과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해 정리하게됨
- 끝으로 기타사항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제협력 촉진, 국가지리정보관련 타법령과의 관계, 권한위임, 벌칙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
-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의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요건이 충족되어야함
  - 현행 통계법 등 정보공개를 제한한 각종 법률 중에서 공익을 위한 공간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함
  - 국민의 세금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수집한 정보 혹은 정부의 예산으로 용역 발주되어 연구소, 대학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가 필요
  - 이때의 재원조달 방식은 미국(USGS : 미국지질측량국)의 경우, 정보의 재생산에 드는 한계비용만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각종 민간단체에서 자체비용으로 수집된 정보도 수익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공간정보유통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함

### 3.2.3 재정적 요건

-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선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며, 이 관리기관은 최소한 유통기술 개발기능,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능, 공간정보망 관리기능을 비롯한 제반 공간정보유통관리 기능을 보유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제반 기능을 수행하고 관리하며 통계청, 국립지리원, 내무부 등의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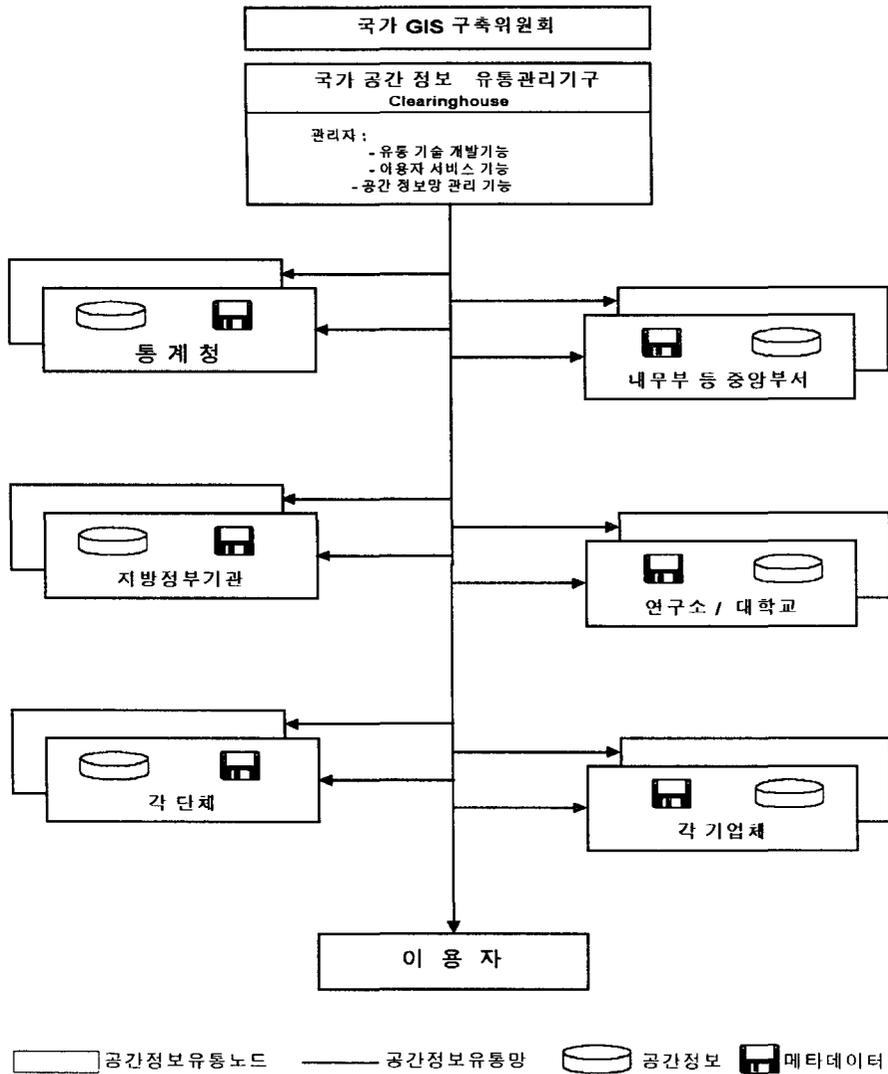
부서, 각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적인 각 노드와의 연결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 이에 대한 소요자원의 해결방안은 수익성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의 출연금 등이 되어야함

### 3.3 공간정보유통 관리기구의 기본골격

#### 3.3.1 기본체계

- 현재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의거한 추진체제(추진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와 5개 분과위원회)는 GIS관련사업의 특성상 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간의 업무협의, 분과위원회간의 관련업무협조 등에 필요한 중재역할이 필요한 실정임
-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그림 6>과 같은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를 제안할 수 있음
-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의 조직체계는
  - 각 부처별, 분과위원회별 GIS 관련업무의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조정위원회와
  - GIS관련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보급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는 공간정보유통관리위원회
  - 주요실무과제를 수행하는 운영분과위원회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그림 6> 국내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설치예

### 3.3.2 세부기능

-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가 담당하게 될 주요기능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추진위원회와 총괄분과위원회의 운영자문임. 현재에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GIS추진위원회 및 총괄분과위원회의 운영 자문을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에서 수행해야함
  - 분과위원회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상태에 대한 점검 및 지원방안 강구

- 범 정부차원에서 국가GIS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기관간의 연계역할
- GIS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법제도 신설 및 개선에 관련된 연구기능 수행
- 국가 GIS사업추진에 따른 공동재원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져야 할 것임

### 3.3.3 운영실무 분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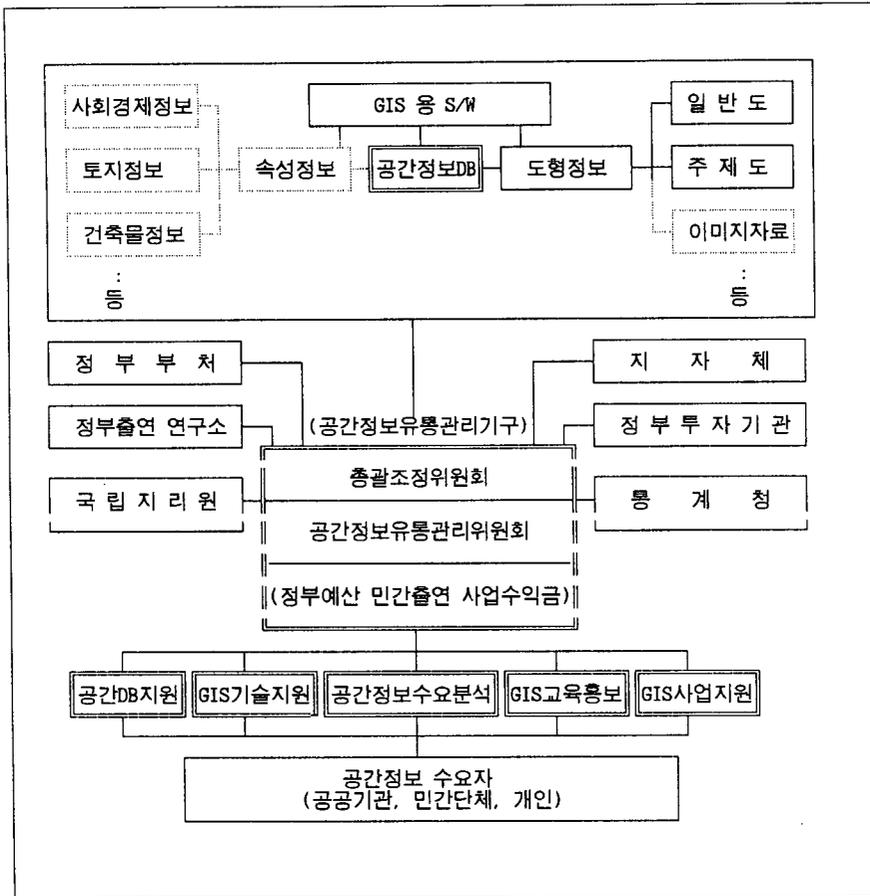
- 주요정책 및 기술과제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실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함
- 공간DB지원, GIS기술지원, 공간정보수요분석, GIS교육홍보, GIS사업지원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조직
- 각 분과에서는 그 실무역할을 지원하는 하부구조를 가짐

### 3.3.4 설립방안

-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설치의 타당성을 비롯하여 기존조직의 활용여부, 조직형태, 조직체계, 예산확보,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의 설립방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 제 1안 : 기존의 국토와 관련된 광역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다양한 공간계획을 수행하고 있거나 통신과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연구기관들을 활용하는 방안
  - 제 2안 : 기존의 지도제작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업무 성격의 확대 개편방안
  - 제 3안 :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 3.3.5 조직(안)

- 앞에서 언급한 기능에 따라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의 세부조직(안)은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공간DB지원, GIS기술지원, 공간정보수요분석, GIS활용체계개발, GIS교육홍보, GIS사업지원 기능을 가진 부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는 물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를 두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제시와 테스크포스 성격의 운영팀의 활약이 필요함



<그림 7>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 세부조직(안)

### 3.3.6 자원확보방안

- 소요재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연금과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수탁비 및 수요 분석, 기술개발지원 등 각종 공간정보사업 수익금 등을 토대로 운영